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78 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황 희·이기헌·한민수

박 정ㆍ이병진ㆍ어기구

이용선 · 이학영 · 이연희

안규백 · 문진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 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 으며,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볼 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.

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 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 설).

법률 제 호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에는 보도(步道)용 방호(防護)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	제15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		
설의 설치) ① 특별시장등은	설의 설치) ①		
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			
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			
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			
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			
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			
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제9조제1항</u>		
	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에는 보		
	도(步道)용 방호(防護)울타리를		
	설치하여야 한다.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